

감소했다. 시급한 당면 과제는 뛰어난 무형유산 연행자를 선정하고 장려하고 명예를 부여하는 한편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 전수생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일이다.

지방행정 단위인 박(bag, 면) 또는 쉼(sum, 군), 심지어 가족 단위의 가축 사육자나 농부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유목과 농경 관련 의식·관습·축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몽골 무형유산의 전파와 보급을 위한 정책을 국제 및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문화의 전파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문화유산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몽골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몽골 연구와 세계 유목무형문화 연구에서 중심이자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을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규모 몽골 연구를 추진하고 다양한 무형유산 종목을 대표목록에 등재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관광을 몽골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새로운 문화상품 소개, 문화 현장 신설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 베트남 사례 중심으로

티민리 레

베트남 문화유산가치증진연구센터 소장

### 초록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베트남의 무형유산 보호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글은 무형유산보호협약 정신을 계승하여 문화유산법(Law on Cultural Heritage)을 개정하고 무형유산 목록작성을 당면 과제로 삼은 베트남의 경험을 제시한다. 목록작성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목록작성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화유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론과 실재는 큰 차이가 있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사례를 분석한다.

목록작성은 단지 무형유산의 종목 수와 유형을 파악하여 보고하기 위해 대규모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위협에 처한 문화유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역 당국이 위협에 처한 유산을 대상으로 긴급 보호 조치 메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목록 작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과 협력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다.

## 베트남 문화유산법 및 무형유산 목록작성 관련 이슈

베트남이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본격화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형유산 보호 정책보다 50여 년이나 뒤늦게 마련된 무형유산 정책은 그동안에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회복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무형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보유자와 많은 사람이 전통 계승 활동을 중단하면서 전통 유산의 맥을 이어갈 전승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대중의 기억으로 전해지던 많은 구전 유산도 영원히 사라져 갔다. 사회·경제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공동체 정신과 문화 역시 격변을 겪었다. 무형유산이 고루한 미신 또는 봉건사회의 잔재로 치부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 결과 보유자들은 자신의 유산을 부정하거나 전통을 포기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말의 회복 가능성도 없이 소멸해 간 사회 관습과 토착 지식·기술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채택한 다양한 권고안과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이행하면서 베트남은 무형유산의 인식 제고 및 보호 활동을 본격 시작했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1986년부터 이루어진 광범위한 인식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무형유산의 인식 제고 및 보호 전략은 이러한 인식 전환에 불씨를 지폈고, 문화를 포함한 베트남인들의 삶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면서도 실제 활동을 촉발시켰다. 베트남은 무형유산 보호 활동이 선진화된 여러 국가의 다양한 전문 지식과 사례를 토대로 무형유산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 구축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 덕분에 무형유산 보호 활동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최근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단계별로 마련되어 서서히 완성되었고, 사람들에게 보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1년에 반포되고 2002년에 효력이 발효된 베트남의 문화유산법은 실제 삶의 조건과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수정 및 보완되었다. 유네스코는 이 법의 조항 근간이 협약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인정했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에 무형유산 및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각 부문의 무형유산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과정에서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 되어 힘을 발휘하고 끝없이 발전하는 사회관계 속에서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살아 있으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고, 공동체의 인정을 받은 무형유산은 이들 공동체에 더 없이 큰 의미를 지닌다. 유산이 그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목록화 작업은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문화유산법(2009)과 문화유산법 이행지침(2010)에 정의되어 있다. 문화유산법 제17조에 따르면 국가는 유산 보유자 및 전승 공동체, 개인 및 집단, 국가 연구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 이해 당사자들이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분류, 연구, 수집 및 관련 목록작성’은 이 조항에 명시된 무형유산 보호 조치 가운데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다. 제18조는 무형유산 목록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한다.

1. 중앙정부 산하의 주와 도시(이하 지방)의 장관들은 해당 지역의 무형유산에 관한 목록을 마련하며, 지역 유산이 국가무형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제반 서류를 체계화해서 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가목록에 포함될 유산 종목을 결정하고 발표하며, 국가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미 국가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 종목이 추후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유산을 국가목록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본조 1항의 이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베트남 문화유산법은 대체로 무형유산 보호 관련 국제 조치들과 일맥상통하며, 무엇보다 목록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문화유산법과 2003년 협약의 용어, 개념, 세부 내용을 비교해 보면 관점·방향·해결책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목록작성의 목적, 일반·국제 규정, 정보 갱신, 공동체 역할, 관련 이슈의 사회 책임을 언급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베트남의 문화유산은 유산의 생명력, 보호조치 필요 여부, 긴급보호조치 필요 여부에 따라 분류되어 국가목록에 등재될 것이다. 이는 협약 제12조 1항(‘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형유산의 지정을 위해’)에 명시된 목록작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베트남은 2003년 협약을 신속하고도 유효하게 이행해 왔다. 문화유산법의 일부 조항은 개정 및 보완되었으며, 특히 무형유산 목록작성에 관한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다. 한 예로 2001년 당시 문화유산법에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고, 목록작성이란 ‘조사’나 ‘수집’ 또는 경우에 따라 ‘통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2009년 개정법에는 ‘목록작성’이란 용어가 추가되었으며,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및 문화유산 목록’(제1조 14항)을 명시하는 등 무형유산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도입되었다. 이는 모두 무형유산을 보

호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무형유산 목록작성 및 국가목록 등재를 위한 제반 서류 준비 지침(회람 04/2010/TT-BVHTTDL)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현재 전국에 걸쳐 이행되고 있다.

### 베트남의 무형유산 목록화 사업

지난 15년 동안 다수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은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전통문화유산과 관련된 목록과 기록물을 축적했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다. 유산 분류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유산 종목(음악, 공연예술, 전통수공예, 축제, 구전 유산)을 기준으로 작성된 목록이 있는가 하면 지리 구분 또는 민족, 지역, 행정 단위(주와 지방)에 따라 작성된 목록도 있다. 사업별 평가도 제각각이었다. 어떤 사업은 목표가 분명하지만 공동체의 참여가 부족한 반면에 어떤 사업은 목표 제시가 명확하고 공동체의 참여가 활발함에도 일관성과 총체성이 결여되었다. 대다수의 연구조사 및 목록작성 사업이 개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정과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트남의 무형유산 목록화 현황 조사 결과(2008년 유네스코 하노이 사무소 유산부 및 관련 기관이 수행) 관련 기관, 전문 협회, 개인들이 각자 역할과 임무에 따라 무형유산의 가치 파악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형유산 관련 연구·수집·기록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생명력과 유산의 보호 방안 및 계획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트남의 무형유산 목록화 작업은 국가 기관, 사회 조직, 개인들이 저마다 다른 목적과 방식을 적용하여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따른 연구 및 수집 목적이 대부분이고 목록작성은 종합 조사, 통계, 수집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다음은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 기관들을 나열한 것이다.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연구소: 무형유산의 종합 조사와 작업을 수행하여 목록을 마련했으며, 종목에 따라 유산을 분류한다(축제, 공예, 공연예술, 민속지식 등).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음악원: 민족 및 지역을 기준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유산을 노래, 춤, 음악 등으로 분류한다.
- 베트남 문화연구소: 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민족의 민속 문화, 공연예술, 전통 공예, 관습 및 전통, 축제, 종교, 민속지식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 베트남 민속예술협회: 2000년 민속예술협회는 ‘계획과 비전 2010(Plan-Vision 2010)’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목록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와 조사 및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협회에 따르면 목록 보강을 위해 최근 각 지방 및 전국에 걸쳐 실시된 종합 무형유산 조사에 모든 협회원이 동원되었다. 그 결과 54개 민족 집단 가운데 46개 집단의 무형유산이 목록에 등재되었다. 등재 유산은 사회문화, 생산문화, 일상문화, 종교문화, 예술문화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는 『베트남 54개 민족 집단의 민속예술에 관한 일반 목록』, 『계획과 비전 2010 이행』 두 권의 간행물에 담겨 있다.
- 각 지방 정부 산하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능한 지역에서 지리 구역 또는 종목을 기준으로 목록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민족 집단을 기준으로 목록을 구축한 상황이다.<sup>1)</sup> 베트남의 각 기관이 주도한 무형유산 목록화 작업은 범위, 형식, 접근법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무형유산 연구와 목록화 사업 및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규모로 수행되었으며, 위협에 처한 유산 등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한 해결책이나 그와 관련된 당국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CCH와 목록화 사업,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보호 조치

베트남 각 지방에서 작성한 무형유산 목록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공통의 유산을 단순히 나열하여 제시하는 과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멸실 위기에 처해 긴급히 보호해야 할 유산 종목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관련 보호 조치를 제안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노이 시의 경우 대부분의 무형유산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침(회람 04/2010/TT-BVHTTDL)에 따른 목록 등재 대상 종목임에도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체계화하고 심도 있게 작성된 무형유산 목록이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서 그 결과 무형유산의 가치와 생명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하노이 시 당국은 ‘탕롱-하노이 천도 1000년’을 기념하여 다수의 문화유산 연구 사업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 연구 사업의 태반은 위협에 처한 유산이 아니라 ‘단순히 탁월한’ 종목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유산 종목, 전승자, 보유자의 가치와 생명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연구가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목록작성에 기여했다고 주장

1) 2012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2003년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따라 하노이 시 당국은 지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록작성: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보호 조치'라는 목록화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무형유산의 현황 파악과 분류는 물론 무형유산이 지닌 가치, 당면 과제, 위험을 평가하여 무형유산 보호 조치를 즉각 취함과 동시에 더욱 활발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오늘날의 사회 여건 속에서도 무형유산이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CCH(2007년 설립)는 베트남 문화유산협회와 제휴한 비정부기구다. CCH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유·무형유산 관련 연구의 최신 성과를 적용하여 베트남의 도시와 농촌 지역 토착 공동체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CCH는 지역 공동체 지도자, 정책 입안 및 집행 기관, 민간 부문, 대중매체, 연구원 및 학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수립하였다. CCH는 이러한 협력 관계로 안정된 생태와 의미 있는 문화 발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지식, 참여, 의견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CH는 지역 주민과 토착민, 그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한편 그들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CH는 개발 압력에 직면한 소수 민족 공동체, 산업화 결과 발생한 이주자들, 급속한 도시화로 위기에 빠진 도시 공간 등 유·무형유산이 멸실 위기에 처한 소외 공동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CCH는 다양한 개입 조치 가운데 정규 교육(학교) 및 비정규 교육(공동체)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으며, 각 세대가 유효하게 상호 존중 및 자부심을 강화하고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노이 시 문화체육관광부는 CCH가 전문가 자격으로 무형유산 목록화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3년(2013~2015)간 CCH는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목록화 사업의 설계 및 이행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2003년 협약 이행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 당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CCH는 다음과 같은 사업 목표를 제안했다.

- 무형유산 종목 수 파악, 생명력 평가, 당면한 과제 및 위험 파악, 하노이 시의 다양한 무형유산 종목에 맞는 보호 조치 제안
-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하노이 시의 대표(또는 위협에 처한) 무형유산 종목을 대상으로 신속한 해결을 보장하는 시의적절한 보호 조치 마련

-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보호 필요성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 및 공동체의 인식 강화와 역량 구축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CCH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제시했다.

- 긴급 상황의 개념과 기준, 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명예 인증, 경제 환경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여 무형유산 긴급 보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국가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유산 관련 서류 준비 등 다양한 보호 조치로 대표(또는 위협에 처한) 무형유산을 파악하고 보호한다. 대규모 목록화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하노이 시의 다양한 무형유산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 무형유산의 보호 및 진흥에 앞장설 주역이자 지속 가능한 인력(담당자 및 전송 공동체) 확보를 위해 훈련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협력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언론 매체가 목록화 및 보호 활동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무형유산을 지속해서 시의적절하게 다룬다면 하노이 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대중 인식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하노이 시 목록화 사업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 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목록작성
- 대표(또는 위협에 처한) 무형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목록작성
- 무형유산 긴급 보호 메커니즘 개발을 목적으로 목록작성
- 무형유산 목록작성 후 국가목록 등재를 위한 제반 서류 준비

## 기대 효과

하노이 시의 대표(또는 위협에 처한) 무형유산이 제때 보전되어 가치가 상승될 것이다.

하노이 시가 보유한 무형유산의 종목 수, 생명력, 당면 과제, 위험은 물론 다종다양한 종목에 적합한 보호 조치를 파악할 수 있다.

무형유산 긴급 보호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보호 담당자 및 해당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보관 및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정기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 사업 의의

이 사업의 결과는 하노이 시 무형유산의 가치 보존과 증진을 위한 관리 측면에서 이론으로나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사업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유네스코의 지원과 권고를 바탕으로 공동체 참여를 강조하는 목록화 사업 및 관련 조치를 실시할 경우 하노이 시는 물론 국가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 정책 수립에서 양으로나 질로 우수한 사례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무형유산보호 과제로서 도제제도(Ustod-Shogird)의 보호

파로가트 아지지  
타지키스탄 문화부 차관

## 개요

도제제도(ustod-shogird)는 수세기에 걸쳐 무형유산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해 온 교육제도다. 이 제도의 부활은 동양의 다수 국가에서 연행되던 다양한 수공예 기술 부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도제제도의 기능 공학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도제제도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 연구는 예술 공예의 교육 과정에 적용되는 현대 공학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도의 자급자족성, 생존력은 언제나 도제제도의 특징이었다. 도제제도는 다양한 예술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기반을 형성했다. 그 결과 중세시대 도제제도 내에서 문서 작성의 전통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예술 창작을 위한 구체화된 규칙(공학)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규칙을 쉽게 간직하기 위해 시의 형태로 전했고, 제자들은 규칙을 쉽게 기억하고 보관하기 위해 노래로 불렀다. 오늘날 도제제도 원칙의 부활은 현실을 볼 때 타당성이 꽤 높다. 도제제도의 훈련 프로그램은 언제나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우리 모두를 한뜻으로 단결시켜서 선조와 후손, 관련 기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우리에게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